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01호
2.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0. 5. 22.
4. 회부일자 : 2020. 5. 29.

II.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장기화 되면서 학교 내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 3조).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
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6.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7.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규정함(안 제9조).
8.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타사항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최기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01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들이 감염병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급’별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긴급도, 심각도, 전파력 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을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1] 감염병 분류 기준

그룹	분류기준	감염병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

(17종)	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급 감염병 (20종)	전파가능성이 우려되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3급 감염병 (26종)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쯤쯤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규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4급 감염병 (22종)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법정감염병인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상을 나타내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인간 접촉을 통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공동생활 시설(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 학원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한 방역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학교는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집단공동생

활을 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부-교육청에서도 학교 방역 소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온라인 학습, 방역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의 구성,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 목표,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자원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 계획의 수립 시 교육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반영하고 서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5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 의심 및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는 「감염병예방법」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휴업·휴교·휴원에 관한 사항과²⁾ 「학교보건법」 제8조의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등교 중지³⁾에 관한 상위법령의 내용을³⁾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감염병 확진자(의심 또는 감염된 학생)로 인해 등교중지, 휴업 등이 결정될 경우 확진자에 대한 학교 내 낙인(비난, 따돌림 등)으로 불안감, 스트레스 장애, 학교 부적응 등 또 다른 심리적 후유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예방 교육 시 일반 예방수칙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난, 따돌림 등 낙인 예방을 위한 심리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표2] 휴업·휴교 및 등교 중지4)

휴업 및 휴교	학교 자체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 유행이 확산된 학교의 학교장이 자체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쳐 휴업할 수 있음. 이 때 필요시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위기 상황시 : 환자가 발생한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지역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휴업할 수 있음. 이 때 필요시 교육청 감염병 관리협의체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단,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시 선(先) 조치 이후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감독청)에 즉시 보고,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후속 조치할 수 있음. - 자체 휴업 결정 후 반드시 관할 교육청(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휴업 및 휴교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시·도 교육청은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 할 수 있음. 이 때 감염병 전문가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등교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실시함. - 등교 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등교 중지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4)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는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수행 및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의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년)」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를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바, 안 제8조제3항이 분류 단계에 따라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의 직제를 각각 평생진로교육국장(주의)-부교육감(경계)-교육감(심각)으로

4)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격상시킨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표3] 감염병 분류 기준

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예방	• 평상시	없음	• 일반적 대비 • 대응체계 구축	
국가위기 단계	관심 (Blue)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세계보건기구 :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국내의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징후 감시 활동(필요시)
	주의 (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세계보건기구 :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 지역	•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실시
		•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 지역	• 대응체제 가동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 전파				
심각 (Red)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 대응역량 총동원 • 범정부적 협조체계 강화 • 전국으로 감시 및 대응 강화 확대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복구	• 유행 종료	산발적	• 평가 및 보완 • 복구 • 감시 활동 유지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995, 2020.5.2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